

행정재산 일시 사용 · 수익 허가 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 · 수익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단체명 :

○ 주소 :

○ 연락처:

3. 사용 · 수익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시간	인원	사용료	비고
			-	명	원	

4. 사용조건

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학교 시설물 파손 시 변상해야 합니다.

다.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라.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됩니다.

마.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귀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 · 수익함에 있어 「대구국제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 · 수익허가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대구국제고등학교장 귀하

행정재산 사용료¹⁾

구분	1시간 기준		
일반교실	· 1실당 5,000원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구 분	체육활동	
		배드민턴	기타 체육
	사용료	1코트 700원	3,500원
대운동장	구 분	5,000㎡미만	10,000㎡미만
	체육활동	5,000원	7,500원
	일반행사	10,000원	15,000원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재산관리관은 위 시설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참고 1> 체육활동과 일반행사 구분

- **체육활동**: 농구, 배구, 축구, 족구 등 소규모 인원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하루)으로 경기에 사용하는 경우. (기타 체육은 배드민턴 외에 실내에서 행하여지는 체육활동)
- **일반행사**: 동창회, 학예회, 친목회 등 일부 체육활동이 포함되더라도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하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체육활동보다 행사 성격이 짙은 경우

※ <참고 2> 대운동장 면적

운동장 전체의 면적. 대운동장 사용 허가 시 대운동장 내 일부 시설에 대하여 사용신청이 없고, 그 시설에 구분이 명확할 경우는 면적에서 제외 가능. (예시: 대운동장 내 농구장, 테니스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조기 축구를 목적으로 사용 신청한 경우 위 시설물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음)

1)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관련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서

1. 사용자

- 성명(대표자명) :
- 단체명 :
- 주소 :
- 연락처:

2. 사용허가 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시간	인원	사용료	비고
			-	명	원	

위 행정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붙임의 허가조건을 부하여 일시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국제고등학교장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재산의 사용목적은 _____에 한한다.

제2조(감독) 본 허가물 이용에 대하여는 일체 대구국제고등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시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시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료) ①사용료는 _____원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납부기한 내 전액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납부기한: 20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시

제6조(시설의 관리) 사용자는 시설사용 후 교내 경비조치를 위하여 당직경비원 (또는 시설관리담당자, 경비회사)에 반드시 연락하여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시간 초과 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후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초과시간만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해야한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사용인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교육적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사용인은 대구국제고등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형 또는 이동하는 행위

제10조(사전협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방안 등을 대구국제고등학교장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예: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부착할 경우 지정된 장소 외에 부착 불가 등)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대구국제고등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인에게 미치는 손해에 대하여 대구국제고등학교장은 일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본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
3. 학교운영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① 사용기간 만료 또는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대구국제고등학교장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사용인의 과실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구국제고등학교장이 결정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사용자 _____ (서명)

허가자 대구국제고등학교장 (서명)

행정재산 일시사용 취소 신청서

1.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단체명 :
- 주소 :
- 연락처:

2. 기신청 내역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시간	인원	사용료	비고
			-	명	원	

3. 취소 사유:

4. 사용료 반환청구

- 반 환 액: 원
- 환급계좌: 은행,

위와 같은 사유로 기신청한 행정재산 일시 사용에 대해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대구국제고등학교장 귀하

대구국제고등학교 시설사용 이용수칙

1. 학교의 시설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국제고등학교 행정실(☎053-235-6575)로 제출해야한다.
2. 이용신청 가능시설은 일반, 특별교실/체육관(강당)/운동장으로, 운동장의 경우 이용신청 외에 주민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오전(월)	06:00 ~ 07:00	07:00 ~ 일몰시까지
오후(금)	17:00 ~ 일몰시까지	

※ 평일 오전(화~금), 오후(월~목)는 기숙사 운영으로 학생 안전을 위해 미개방함

3. 학교시설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 및 이용하는 자는 모두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 ①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②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시설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④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고 사후 정리 및 청소를 깨끗이 하고, 쓰레기 등은 수거하여 가지고 간다.
 - ⑤ 학교시설 사용계약 시 학교장과 사용자는 학생안전을 위하여 사용기간 동안 사용 시설에 대한 순찰활동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 ⑥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해당 시설 내에 게시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 ⑦ 학교 주관 행사 및 다른 기관 일시 사용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교실 사용을 중지하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된다.
 - ⑨ 위 이용수칙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대구국제고등학교장